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6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3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의 책무는 유지하되, “시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”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며,
- 안 제32조 관련 “정비계획 수립” 내용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도록 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4조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, 안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, 같은 조에 제4항에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.
- 안 제32조제3항 중 “정비계획 수립”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비”를 “자연형 하천정비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한다.

안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32조제3항 중 “정비계획 수립”을 “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비”를 “자연형 하천정비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시장은</u>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·기술 등을 교류·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<u>시장은</u> <u>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</u>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</u> <u>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</u>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</u> 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
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생략)	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<u>자연형 하천정비</u> <u>계획 수립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설></u>	④ 하천의 관리기관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④ ----- <u>자연형 하천</u> <u>정비</u>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3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하천의 관리기관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④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장은 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(법인·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5조(시민의 책무) ① <u>시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32조(자연형 하천정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시민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〈신설〉</p>	<p>④ <u>하천의 관리기관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